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-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(2000. 1. 28)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보완·정비하여
- 도시계획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

4. 주요골자

- 상위법 적용 조문 정리
  -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2 → 법 제85조 내지 88조
  -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3→시행령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
- 위원회 구성 조정
  - 위 원 회 : 22인 이내 → 20인 내지 25인 이내
  - 소위원회 : 5인 이상 7인 이하 → 5인 내지 9인 이내
-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정(안 제4조)
  - 현행 조문중 제2호를 삭제하고 심의 및 자문사항 구체적 명시 추가

-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
-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안과 시장·군수가 수립하는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
- 기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도시계획과 관계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
○ 현행 조문의 미비점 보완

-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,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안 제6조제3항)  
→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방재·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-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(안 제11조제1항)  
→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-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(안 제11조제2항)  
→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사항

○ 조 제목 변경
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→ 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
- 제8조(회의) → 제7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이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리, 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능 조정,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